

## 특 집

### 도서관법 개정과 도서관 정책 방향 변화

지난 10월 4일 정부공포로 확정된 새로운 「도서관법」은 기본적으로 도서관 정책 수립 및 추진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역 단위 도서관 정책과 행정 강화라는 큰 틀의 변화를 담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개정 「도서관법」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 질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지방분권시대 도서관 정책 방향에 대한 지방설명회(2006.11.29, 광주광역시)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록한다. 아직 확실한 모양새를 갖추지는 못했으나, 위원회 등은 새로운 도서관문화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편집자 주



특 집

# 변화(change)를 기회(chance)로 만듭시다



**한 상 완**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연세대학교 인문학부 문헌정보학 전공 교수  
swhan@yonsei.ac.kr

지금 우리는 변화의 시점에서 서 있습니다. 세상은 늘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대, 우리가 그 변화의 방향과 내용을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변화에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변화를 주도해 갈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8일에 2005년 6월 1일 이미경 의원등 47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년 여 시간동안 많은 논의와 검토, 협의 끝에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돌이켜보면 도서관법 개정은 2002년 초 우리 한국도서관협회가 시작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 우리 도서관계는 이전의 상황과는 크게 다른 지금의 상황, 즉 지식과 정보가 중요시되고, 문화와 교육 그리고 지역의 공동체성이 중요한 시점에 도서관이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자긍심을 가지고 법 개정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법 개정의 핵심은 도서관이 스스로 자신의 역할과 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며, 도서관과 도서관인의 자발성에 기초한 참다운 도서관 만들기의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도서관계는 적지 않은 외적 변화와 압박에 당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공도서관은 명칭변경이나 민간위탁으로 인해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으며 예산과 인력 등에서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학도서관은 대학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은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면서도 정작 핵심요소인 전문인력 확보가 뒤따르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

문도서관이나 특수도서관 부문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사회는 어린이도서관 건립 운동이나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심 확대 등 외형적으로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지지가 커지고 있어, 도서관계가 시급하게 이같은 사회적 요구를 수용할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도서관계는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확산되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법과 제도의 변화를 시도해 온 것입니다. 그러던 중 2005년 이제는 우리 도서관계의 지우가 되신 이미경 의원이 법 개정을 추진해 주셨고, 그 결과 2007년 4월 5일부터는 개정된 「도서관법」에 의해 새로운 도서관 문화를 열어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안을 발의한 이미경 의원은 물론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들과 문화관광부등 행정부 관계자,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을 비롯한 도서관계 동료 여러분들의 지원과 협력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같은 동지적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라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변화는 이제부터입니다. 법 개정은 시작을 알리는 작은 나비의 날개짓일 뿐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이 일순간 해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도서관에 대한 각종 지원과 지지가 상승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법 개정보다도 더 세심한 논리와 실천적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법 개정은 하나의 방향을 설정한 것입니다. 그 방향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도서관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는 오롯이 우리 도서관계의 상상력과 열정, 의지, 도서관 전문직에 대한 확고한 신념, 그리고 실천과 연대의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의 다른 부문은 물론 도서관과 정보 이용자인 국민의 지지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사실 좋은 도서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도서관을 도서관답게 만드는 기반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서관들이 조금은 국민들에게서 먼 공공 시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서관의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만족스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고 해도 반론하지 맙시다. 이제 그것은 과거입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를 던지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낼 시발점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날 우리들이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과거도 이젠 잊고, 법 개정으로 새로운 시대를 함께 시작합시다.

지난 9월 8일 법 개정과 10월 4일 정부 공포로 이제 6개월 후인 2007년 4월 5일부터는 새로운 법 체제에 따라 도서관정책이 수립·집행되고 개별 도서관들이 잘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금 문화관광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법이 담고 있는 새로운 내용, 즉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나 도서관종합발전계획, 시·도 차원에서 지역대표도서관,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등 도서관정책 시스템을 새롭게 만

들어야 할 내용들을 시행령을 통해서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협회를 비롯한 도서관계에서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도서관의 문제점을 풀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법 시행령에 반영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이미 산하 관종별 협의회와 전문위원회, 그리고 학계와 대학 등에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서관 현장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사서직원 배치기준의 개선 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방안은 기본적으로 2003년 우리 협회가 전문가와 도서관계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한 '한국도서관기준'을 중요한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둔 것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계의 요청과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도서관 수준은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서관 현장에서는 기대가 큰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을 실현하는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미 상당부분 지방분권 추진에 따라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확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이해와 협조가 없다면 우리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도서관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부담해야 할 재정적, 인적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협회는 도서관 현장의 바람과 실현 가능성 사이에서 고민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잘 조정할 수 있기 위해 보다 많은 검토와 준비, 협의와 협상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여러 동지들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과의 대화를 통해, 그리고 현실적인 고려를 통해 지금 이 시점에서 도서관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 내는 일과 과거의 과제를 풀어내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도서관계가 도서관법 개정과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어떤 선택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견월망지(見月忘指)의 정신으로 핵심에 집중합시다. 우리 협회로서는 그동안 도서관 발전의 가장 큰 저해요인은 정책의 다원화로, 이로 인한 종합적 도서관 발전 정책 부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실효적인 확보와 운영입니다. 위원회는 이미 우리 도서관계가 오래 전부터 주장해 왔던 도서관정책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법 개정 초기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상정했었는데, 올해 초 대통령께 공공도서관 정책현황과 대책을 보고드리는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도서관 발전을 챙기시겠다는 말씀에 따라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그 위상이 크게 격상된 것은 정말 큰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도서관정책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 기구로, 매 5년마다 도서

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도서관 발전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면 도서관계는 정말 새로운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는 사무기구와 기획단도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기구의 직제와 정원 확보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위원회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충분한 인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지금 개정 법과 관련해서 가장 최우선의, 그리고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위원회 조직 확보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위원회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면 지난 세 월 도서관 발전을 위해 제기했던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회를 유효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요구들은 다소 유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는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다면 지금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 요소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참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솔로몬의 지혜가 아닐까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핵심은 지방분권 시대를 맞은 도서관의 새로운 활로 모색입니다. 지방자치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정부도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새로운 법도 지역이 도서관정책과 운영의 중심이라는 관점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대표도서관과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라는 외형적 틀 안에는 지역별로 도서관의 발전을 모색하고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져 나가는,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도서관, 행정당국이 함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서관들은 관종별로, 중앙의 정책에 따라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관종이 아닌 지역을 사고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서관들도 이제 지역내에서 관종이나 규모, 직급 등이 아니라 도서관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인 이용자(이전 대학도서관이나 전문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에게 최상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동료이자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더 긴밀히 대화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통해 자원과 서비스를 공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서로가 존립과 발전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대표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확장하고, 여기에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도서관의 존재를 인식시키고, 서비스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과 활동방향의 전면적 수정은 지금껏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충분한 경험과 능력의 축적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 변화가 두렵고, 또 혼란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 필요한 것은 상상력과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법은 우리에게 가능성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머지 영역은 우리 도서관

제가 스스로 채워갈 수 있는 여백입니다.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지 않은 것이라면 무엇이든 새롭게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해 보자'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 해방이후 지금까지 풍족한 외부지원과 재원이나 인력이 있어 우리 도서관계가 그나마 발전을 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도서관계의 헌신적 노력과 창의력에 기댄 바 크다는 것은 스스로도 자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상황은 같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겨우 어딘가를 가르키고 있는 지도 한 장을 얻은 것일 뿐입니다. 지도를 따라, 때로는 지도를 넘어 가야할 목표를 향해 갈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들의 결심과 실천에 달렸습니다. 지방분권이라는 거대한 로드맵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물결에 휩쓸려 갈 것인가 아니면 변화하는 물결을 이용해 우리가 먼저 목표를 정하고 희망의 배를 띄울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지방분권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들은 이제 관중을 넘어, 규모를 넘어, 도서관의 직급을 넘어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할 지역주민들에게 최선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번 법 개정에 의해 우리 전문가들이 당면한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합시다. 남에게 끌려 어쩔 수 없이 하지 맙시다.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먼저 구상하고 먼저 나서서 제대로 된 도서관 문화를 지역사회에 꽃 피웁시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힘이며 존재의 버팀목이며, 미래를 향해 손잡고 나갈 친구이고 동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변화(Change)는 분명 힘든 일이고, 또 불확실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만일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를 통제할 능력이 있다면, 그럴 의지가 충분하다면 변화는 새로운 기회(Chance)입니다. 지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강력하고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법을 근거로 변화를 주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꿈꾸어오던 새로운 도서관 문화, 국민에게 사랑받고 일하는 우리 스스로 자긍심과 즐거움이 가득한 도서관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있는 미래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상력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법 개정으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움이 당장 현실에 딱 맞을 수는 없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새로움이 현실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난 8월 우리가 개최한 세계도서관정보대회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이번 서울에서 우리 힘으로 개최해 세계 도서관계를 깜짝 놀라게 한 세계도서관정보대회의 경험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1999년 개최 확정 이후 수 년동안 제대로 된 물적, 인적 기반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결단코 2006년 세계도서관정보대회를 성

공적으로 꾸려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착실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의 어떤 대회보다도 알차고 화려하게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일 준비과정에서 직면했던 솔한 어려움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굴복했다면, 또한 기존의 방식에 안주해 새로운 상상력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이번 세계대회를 가장 아름답고 충실한 대회로 만들어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법 개정 상황도 대처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면 새로운 도서관 문화, 국민에게 사랑받는 도서관 만들기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자유로운 상상력뿐입니다. 그러나 이번 세계대회 개최 경험을 통해 그것만 있다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도서관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도서관계 모두 이같은 각오로 이번 상황을 진중하게 대응해 나가기를 권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어떤 자세로, 어떤 일에 매진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당장의 필요와 과제를 해결하는 단기적 처방이 아닌, 진실한 개혁의 시각을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장기적 처방이 무엇인지를, 개개인의 욕구 해소가 아닌, 도서관계 전체의 요구와 도서관에 대한 시대적 요구의 수용이라는 관점에서 현상을 바라보고 대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서관법 개정은 지식정보기반사회, 문화의 세기, 여가의 사회를 맞아 좋은 도서관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는 국민을 위해 도서관을 개혁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도서관계도 이같은 법 개정의 목적을 이해하고, 타인에 의한 개혁이 아닌 자발적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의 시대에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짚기 어려울 때는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격언을 생각합시다. 우리가 지켜야 할 근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도서관 부문의 전문가입니다. 올바른, 똑바른, 제대로 된 도서관 운영은 우리의 책무입니다. 그 누구의 도움이 없어도 우리가 당당히 이루어야 할 시대의 요구입니다. 법 개정은 그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우리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봅시다.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우리의 발전 방향과 태도를 정합시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없더라도, 머지않아 꼭 이 시대에 가장 사랑받는 전문가로, 또는 전문가집단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변화를 기회로 만듭시다. 큰 시야로 큰 그림을 그려봅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도서관계도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당당히 나섭시다. 오늘 우리 서로를 격려하며 새로운 법을 기반으로 새로운 도서관 문화를 건설합시다. 오늘이 그러한 주체적 변화를 시작하는 날로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특 집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의미와 운영전략



이 용 남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문헌정보학 전공 교수  
lyn0802@hansung.ac.kr

## 1.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어떠한 기구인가?

국가 차원의 도서관정보정책은 각각의 현안에 단발적으로 대처하는 접근 방식보다는 이러한 도서관정보정책이 효율적이며 지속적으로 순환될 수 있는 확고한 틀을 마련하여, 모든 정책적 이슈에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적 장치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시스템적 장치의 엔진역할을 하는 기구는 바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인데, 선진국들은 이미 일찍이 이러한 기구를 설치하여 국가 도서관정책을 주도하며 전체 도서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1970년 대통령 직속의 상설기관으로 설치된 ‘국가문헌정보학위원회’(NCLIS)가 그러한데, 도서관정보정책을 조사·연구·개발하여 이를 대통령과 의회 그리고 정부 각 부처에 보고·건의·자문하며, 국가차원의 도서관·정보 활용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영국의 도서관정책위원회(LIC와 Resource) 또한 각급 정부기관에 대해서 도서관 관련 사항에 관해 권고·자문하고, 다양한 도서관정보 시스템을 조정하며, 긴급 과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 촉구와 적절한 대응책 제시, 그리고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국가차원의 연구전략을 수립·개발하며 그 결과를 평가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사례를 본받고자 1987년 도서관법 개정에 이를 반영하여, 1989년 9월에 처음으로 도서관발전위원회를 출발시켰으나, 유명무실한 존재로 방치하다가 그나마 2000년 1월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폐지되어 버린 후, 2002년 12월에 법률적 기반이 없는 문화관광부 훈령으로 부내에 설치하여 취약한 구조로 존재하여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구조를 살펴보고, 새로운 도서관법으로 통과된 대통령 산하 조직으로서의 이 기구 발족에 따른 전략적 과제들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 1.1 미국의 사례<sup>1)</sup>

#### ① 설치 과정

미국의 1969년도 대통령 자문그룹이었던 ‘국가도서관자문위원회’ (National Advisory Commission on Libraries)는 도서관정책 계획기능을 가진 연방정부 산하의 상설기구로서 ‘국가문헌정보학위원회’의 설치를 권고하자, 1970년 미국 공법(Public Law 91-345 : 약칭 NCLIS 법)을 제정함으로써, 대통령 직속의 상설 독립기구로서 ‘미국문헌정보학위원회’ (National Commission on Libraries and Information Science: NCLIS)가 출범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법률은 1973년, 1991년, 그리고 1996년에 부분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설립 당시(1970년)의 법률 제2조는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도서관·정보서비스는 국가 목표의 달성과 국가 교육자원의 효과적인 이용에 필수적인 바, 이러한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 공공 및 사설기관과 협력할 것임을 미국 의회가 확인한다’는 강력한 표현으로서 NCLIS의 설립에 따른 국가의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 ② 기능

NCLIS는 매우 광범위한 기능을 법률로부터 위임받고 있다. 도서관·정보서비스에 관련된 정책 수행에 관하여 대통령과 의회에 대한 자문, 도서관·정보 요구와 관련된 서베이와 연구 수행, 전국적인 도서관·정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의 개발, 문헌정보학에 관련하여 연방정부, 주와 지역정부 및 사설기관에 대한 자문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 이용남. 2003. “미국과 영국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조직과 활동에 대한 분석”, 한국비블리아 14권 2호, 97-117.

### ③ 조직 구조 및 운영

미국의 경우는 세계의 여러 다른 나라와 달리 전체 도서관을 관장하는 연방정부 부처(部: Department)가 없는 셈인데, 그 대신 연방정부의 도서관 지원금을 배분하며 도서관 육성 업무를 집행하는 IMLS(Institute for Museum and Library Service)<sup>2)</sup>와, 국가 도서관 정책 업무 연구·개발·자문기관인 NCLIS 두 기관이 도서관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특수한 구조이다. 이 위원회는 예산·직원·물품조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행정서비스를 정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상설 사무국을 두고 있다.

위원은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15명 정도 : 의회도서관장은 당연직)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전체 위원중 1/3정도는 전문직 사서 또는 정보전문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회의와 함께 회의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소위원회와 연구팀을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장이 사무기구의 직원을 임명토록 법에 명시하고 있다.

### ④ 주요 활동

NCLIS가 수행하여 온 주요 활동을 요약하자면, 국가 정책 수행에 관해 대통령과 의회에 대해 자문하는 활동, 도서관 행정기관인 IMLS 당국과 연방정부의 관련부처에 대한 각종 자문활동, 업무성과 측정 및 조정 활동, 그리고 국가차원의 도서관·정보 요구를 조사·분석하여 정책과 관련된 연구·개발 활동 및 그 결과물을 보고서로 발간하는 활동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매년 1월 말까지 지난 회계년도 동안의 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하여 위원회의 입장과 활동상을 검증받고 있다.

2) IMLS는 교육부가 관장하던 연방정부의 도서관 프로그램과 박물관 프로그램을 넘겨받아 관리하기 위해, 1996년에 제정된 '박물관 및 도서관봉사법' (Museum and Library Services Act)에 의해 설립된 정부 행정기관이다. IMLS는 '도서관봉사 및 기술법' (Library Services and Technology Act: LSTA)과 '박물관봉사법' (Museum Services Act)을 관장하며, 도서관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금 관련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

## 1.2 영국의 사례<sup>3)</sup>

### ① 설치 과정

영국은 도서관·정보 서비스에 관한 최고의 정책자문기구로서 1995년에 설치된 ‘도서관·정보위원회’(Library and Information Commission: LIC)가 있었는데 이 기구가 개편되어 2000년 4월에 발족된 ‘박물관·기록보존소·도서관위원회’(Council for Museums, Archives and Libraries: 일명 Resources)라는 강력한 기구로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② 기능

‘도서관·정보위원회’(LIC)는 도서관·정보서비스 정책에 관해 정부기관에 자문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 및 국제 활동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그리고 이 위원회가 통합되어 2000년에 발족한 ‘박물관·기록보존소·도서관위원회’(Resource)는 각 부문 별 정책수행을 위한 전략적 리더십을 개발하고, 해당 부문의 입장을 변론하며, 관련 정책을 정부기관에 자문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바, 소수 위원 중심의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자문 기능을 넘어서는 지속적인 정책연구기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 ③ 조직 구조 및 운영

1995년에 발족된 LIC와 이 기구를 통합·개편하여 2000년에 발족한 Resource는 다같이 정부의 ‘문화·매체·체육부’ 산하에 설치된 비정부부처 공공기구(Non-Departmental Public Body)이다. 이들 위원회는 산하에 필요한 소위원회를 활성화 시켜 운영의 효율화를 꾀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지원 아래 상설 사무국을 두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LIC는 정부의 방침(Comprehensive Spending Review)에 따라 1999년에 영국국가도서관(British Library) 연구개발부의 기능 및 직원을 흡수하여 정책연구 기능을 일원화 하였다. 현재 Resource는 3개 부문을 함께 관장하고 있는 큰 규모의 위원회 조직과 사무국으로서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이용남. 전게서

LIC 위원장은 주무부 장관이 임명하며, 나머지 위원은 위원장과 관련 각 부처 장관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부 장관이 임명하였다.(14명, 국가대표도서관장은 당연직) 한편, Resource의 위원은 주무부장관이 임명하며(17명), 전체회의와 함께 소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는데(LIC위원이 아닌 사람도 소위원회에 참여), Resource의 전체회의는 연간 6회, 소위원회는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사무기구는 LIC 시절에는 소규모였으나, 국가대표도서관 연구개발부를 흡수하고 Resource로 통합 후에는 대형화되었으며, 현재 5개팀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④ 주요활동

LIC가 수행하여 온 주요 활동들은 도서관·정보 분야 발전전략과 정책에 관련된 연구 계획을 결정하고 조정하는 활동, 도서관 관련 중앙정부기관, 지방정부기관, 지역단체, 국가대표도서관, 비즈니스 기관 등에 대해 자문하는 활동, 정책제안 및 성명서 발표,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등을 간행하는 활동, 그리고 세계적인 관점에서 도서관·정보 분야의 문제를 조율하고 국가 입장을 대변하는 국제 활동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Resource의 주된 활동은 도서관을 비롯한 3개 부문의 현안에 관하여 정책 대안을 연구하며, 정부에 대해 자문하는 일인데, 이러한 활동은 과거 LIC 조직에서 수행하던 활동과 유사하다.

### 1.3 우리의 과거 도서관정보위원회<sup>4)</sup>

#### ① 설치 및 폐지 과정

우리나라의 도서관정책위원회는 과거 오랫동안 도서관계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지 못하다가, 1987년 11월에 개정·공포된 도서관법에 관련조항을 신설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처음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당시 도서관법에서는 문교부장관 자문기관으로 ‘도서관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문교부 소관 시절이던 1989년 이후에 전체회의 2회, 분과회의 3회 개최되었으며, 문화부로 이관된 1991년 이후에도 겨우 전체회의 4회, 분과회의 2회 개최

4) 이용남. 2003. “우리나라 도서관정책위원회의 활동 분석과 활성화 방안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권 4호. 269-293.

하는 형식적 존재로 방치하여, 결국은 유명무실한 위원회라는 빌미를 제공하다가 급기야는 2001년에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 정비 계획에 의거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서 삭제되어 폐지되고 만 것이다.

이 위원회가 폐지된 후에는 문화관광부의 훈령으로 2002년 12월에 ‘국가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가 다시 설치되었다. 그러나 2년간 유지되었던 이 위원회는 법률적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설치된 관계로 도서관 관련 중앙정부부처 관계자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어 관련부처와의 정책조율 기능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속력이 약해 명실상부한 도서관정책위원회로서의 활동을 기대하기는 태생적으로 불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 ② 기능

설립 당초의 도서관법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과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도서관정보협력망의 체제구성 및 그 기능의 조정·총괄에 관한 사항, 도서관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및 문교부장관이 부의하는 기타 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기능을 명시하였다. 도서관 정책의 문화부 이관과 관계 법률의 수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주무부 장관 자문기구로서의 기본적 기능은 대체로 대동소이하였다.

## ③ 조직구조 및 운영

설립 당초 도서관법시행령에 의하면, 도서관발전위원회의 구성은 2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문교부차관, 부위원장은 국립중앙도서관장으로, 위원은 당연직으로서 경제기획원·내무부·재무부·문교부·체신부·문화공보부·과학기술처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도서관과 관련 있는 업무 담당자 각 1인과 한국도서관협회의 장으로 하고, 임명직은 문헌정보학 교수나 기타 민간인 중에서 주무부장관이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였는데, 그 후에도 이와 유사하였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임명토록 규정토록 하는 등 틀을 갖추었다.

이 위원회가 법제화되어 처음 출발한 초기에는 어쩔 수 없이 위원회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피동적이었다 하더라도, 1991년 도서관 정책의 문화부 이관 이후에도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주무당국의 기대나 인식이 매우 저조했다는 평가는 그간의 운영 행태와 관련 자료의 분석으로 확실하다.

한편 위원회의 운영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았다. 이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위원회 소집 및 운영 책임 주체인 주무당국에 있음은 물론이지만, 도서관계에서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기회의 연2회를 규정한 위원회의 운영세칙을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노력이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로 개최하려는 노력 등이 별로 보이지 않았는데, 도서관계에서도 이 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기 어려우리라는 체념이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회의에서는 30명 가까운 위원들이 한꺼번에 실질적인 토의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즉흥적이며 산발적인 제안이 많아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는데, 분과위원회나 연구팀 등의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그래서 위원들의 정책제안이나 건의사항은 회의석상의 발언으로만 끝나고, 그에 대한 정부당국의 입장이나 추진결과 등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은 전혀 가동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질곡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돌파구를 찾던 중 금년에 도서관법 개정을 계기로 하여 대통령 직속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설치라는 획기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2. 개정 도서관법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2.1 주요 내용

2006년 10월 4일자로 새로운 ‘도서관법’이 개정·공포되어 2007년 4월 5일 시행될 예정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토록 하였는데(법제12조), 이 위원회의 역할을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의 수립·심의·조정’으로 그 기능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대상 업무로서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였다.

- ① 제14조의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② 도서관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 ③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 ④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 ⑤ 도서관 및 자료의 접근·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⑥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도서관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리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고, 위원회 기능 수행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에 '기획단'을 두도록 하였으며, 이들 사무기구 및 기획단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였다. 위원장은 사무기구 및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였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제13조),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임 중에서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문화관광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대통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과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토록 하였다.(단, 초대위원은 부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음)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로서는 5년마다 수립하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라 할 수 있다.(제14조) 이 종합계획에는 도서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도서관의 역할강화, 환경개선, 협력체계 활성화 등 도서관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역점 추진과제 및 관계 부처 등 협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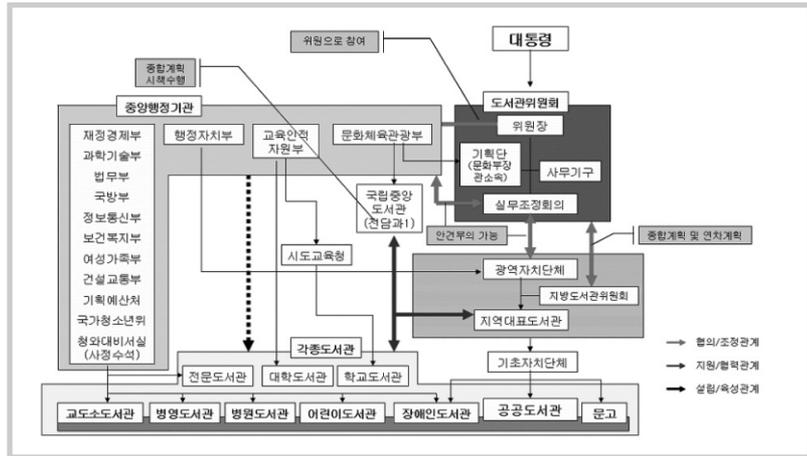
현재 주무당국에서 초안 마련 중인 시행령에 포함될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 등 14명이며, 나머지는 민간 중심의 위촉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위원회의 회의결과 및 도서관 정책과 시책의 주요 진행상황에 대해 위원장은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이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 특별자치도의 장이 참석하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장은 소관 도서관 관련 주요정책에 관해 필요할 경우 이 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들 안건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도서관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실무조정회의를 들 수 있도록 하였다.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새 도서관정책 체계를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새 도서관정책 체계도



### 2.2 새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위한 전략

우리나라의 과거 사례와 비교해 보아서는 물론이지만, 앞에서 살펴본 주요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해 보더라도, 법규상에 명시된 새로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은 한마디로 과거에는 생각조차 못했던 수준의 획기적인 내용이며, 건국 후 60여 년 이래 우리 도서관계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 차원의 도서관정보정책은 개개 현안에 일회성으로 대처하는 접근 방식보다는 이러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제어될 수 있는 확고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모든 정책적 이슈에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적 장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이를 경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라고 본다. 무엇보다도 정치·사회 환경에 따라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 마련인 대통령 소속 위원회라는 점을 감안하여 내년 한해 안에 중요하고 굵직한 기반공사는 마쳐야 하는 관계로 일정이 매우 촉박하므로 치밀한 사전 준비로 그 효과를 살려야 한다는 사실이다. 짚어야 할 주요 문제를 사안 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위원회 출범과 사무조직에 수반하는 문제

- ① 법에 명시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산하의 상설 사무조직으로 ‘사무기구’와 ‘기획단’을 두도록 하였는데, 두 기구는 위원회가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한 핵심적 기구이므로, 서로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무기구와 기획단에 적절한 수의 인력과 조직이 필요하다. 이미 2006년 4월 문화관광부와 국립중앙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연구 내용이 적절하게 실제 구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 ③ 사무기구와 기획단은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상호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할 것이다. 두 기구는 업무상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는 등 물리적, 심리적으로도 협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④ 내년의 정치 일정상 2007년 하반기부터는 정치적 영향은 물론 행정력을 극대화하기 어려울 터이니 2007년 4월 5일 위원회 공식 출범(법 공포 후 6개월 후 발효) 이전에라도 위원회 활동을 준비할 수 있는 실무조직이 필요한 바, 최소한 2007년 1월부터는 실제적으로 조직되어 활동할 수 있어야만 한다.
- ⑤ 현재 행정자치부와의 직제/정원 협의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하여금 전향적으로 본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토록 하여 사전 준비작업이 추진될 수 있는 실무조직에 대한 협조를 설득하여야 한다.
- ⑥ 그러나 만일 사전에 사무조직 운영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하겠다. 현재 구성, 운영 중인 문화관광부 문화정책팀 내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기획단 준비반’을 중심으로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도서관협회 등이 인력과 재정을 분담해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활동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을 것인 바, 이를 위해 도서관계가 총력을 기울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위원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 ① 위원회가 출범 직후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과제는 ‘도서관종합발전계획’ 수립이다. 그러나 자칫 시기를 놓칠 경우 새 정부 이후로 넘어가면 우선순위에 있어 관심 밖

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빠른 업무 시작을 위해 사전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겠다.

- ② 다음으로 시급한 과제는 시행령 상에 명시된 시설 및 자료, 사서직원 배치기준을 현실화하는 것과 함께 사서자격제도의 개선이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처리되기보다는 도서관계가 전문적으로 대안을 내어 놓아야 할 과제이므로 도서관계 내부에서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검토, 사전조율을 거쳐 확정 안을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도서관협회를 중심으로 학계와 모든 도서관계가 진지하고 실질적인 노력을 가시화해야 할 것이다.

### 2.3 우리 도서관계의 자세

우리 도서관계는 건국 60여년 만에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시기적으로는 위태로울 정도로 아주 어려운 시점에 주사위가 놓여져 있다. 우리 도서관계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운명의 주사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우리의 몫이다. 촉박한 일정이란 울타리를 넘지 못해 절호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무산시킨다면, 우리 도서관계는 역사에 또다시 죄를 짓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계기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도서관계는 모두가 힘을 합쳐 대응적으로 동참하고 필요한 개혁에는 자발적으로 이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힘을 결집시켜야 할 책무가 있는 한국도서관협회는 다각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과 적시에 전문직 단체로서의 입장 개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인적·물적 기반을 총동원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문헌정보학계에서도 위원회가 출범하자마자 학계의 의견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통일된 의견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의견조율이 이루어져 있어야 할 것이다. 

특 집

# 지방분권과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

정 현 태

한성대학교 · 상명대학교 강사  
 huntj@hanafos.com

## 1. 문화행정의 지방분권화

○ 지역주민의 자기결정권을 기반으로 지역개발과 특성화를 추구하는 지방분권화 추세 속에서, 지방문화는 이제 주민 스스로가 만들고 즐기는 참여적인 자치문화로 강조되고 있다.

- 공공도서관은 구미선진국에서에서 지역사회 공공인프라로서 시민자치문화의 산물로 출발하고 있다. 즉 도서관의 건립과 운영은 지역주민의 발의와 지지를 기반으로 하며, 민주적 지방자치문화의 발전과 더불어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 기초공공시설로서 시민자치문화의 상징처럼 성장해 왔다.

○ 우리사회도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가 실시된 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고 있으며, 최근에는 과도한 중앙 집중을 개선하고, 지방의 고른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행정 및 재정의 분권화는 물론 문화행정의 지방정부 이양 등을 통해 전국적인 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다.

- 참여정부는 중앙행정지방이양 촉진법에 따라 주요 문화행정의 지방정부 이양사업으로, 박물관 미술관 관련 등록업무를 지방정부로 이양하였으며, 공공도서관 관련업무

또한 2004년 문화정책국 도서관박물관과의 폐지와 함께 설립 및 지원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고, 도서관정책업무를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정책과로 전환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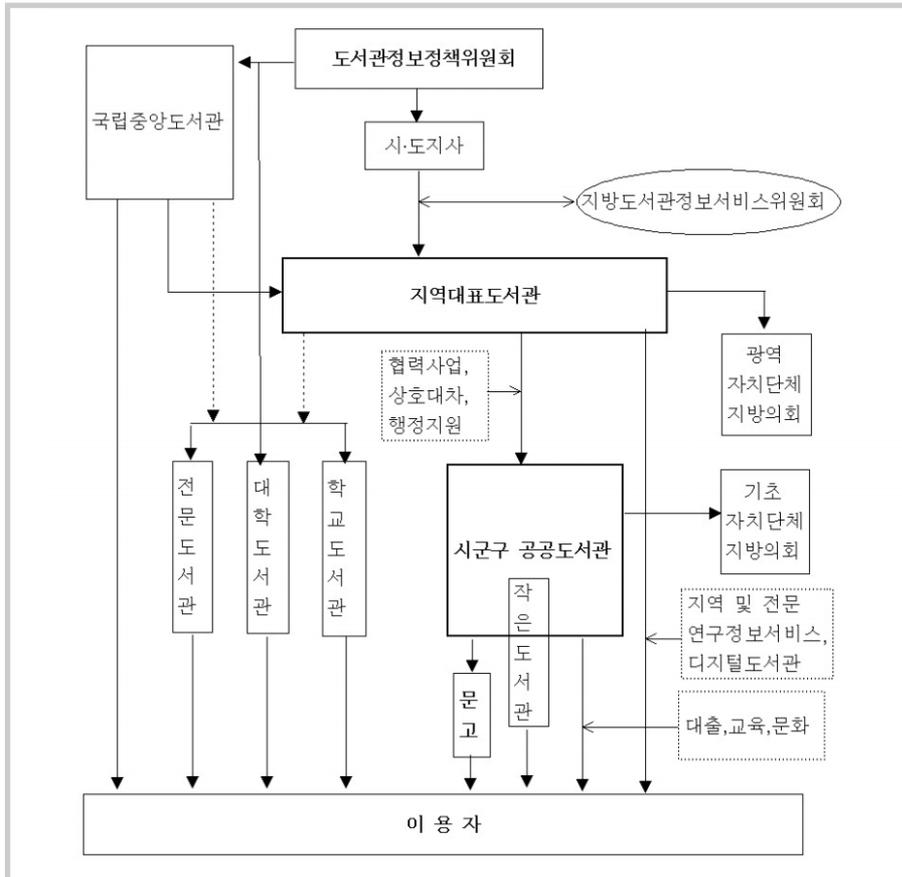
- 이번 새로운 도서관법 개정 동기의 중심은 이와 같은 지방분권화의 추세를 반영하여, 도서관정책 수립 및 추진 주체로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문화기반 인프라로서 지역도서관서비스체제를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실용적 서비스혜택을 증진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 지역대표도서관을 설정함으로써 지방분권시대의 주민밀착형 도서관문화를 개발해 나가는 데 있어 광역자치단체의 정책주체성을 구현할 수 있으리라고 보았다. 이로써 국립중앙도서관 중심의 집중형 국가도서관정보정책을 지방정부주도의 분산협력체제로 정비하고, 지역사회에 착근하는 실용적 서비스체제로 전환하는 국가도서관서비스인프라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 2. 지역대표도서관이란?

### 2.1 지역대표도서관 설립 운영 취지

- 도서관법에서 지역대표도서관을 두는 이유는, 지방분권시대의 지역균형개발과 주민자치문화 정책주체로서 광역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정책에 대한 합당한 책임과 역할을 개발해 내기 위한 의도이다.
-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 시군구 중심으로 산만하게 추진되고 있는 공공도서관서비스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관중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도서관서비스를 지역특성과 주민요구를 반영하는 관중간 협력서비스체제로 전환하는 정책주체로서 광역자치단체의 중심역할이 기대된다.
- 지역대표도서관은 공공도서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대학, 전문도서관 등 모든 관중을 포괄하는 대표도서관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전국적인 수준에서 관중간 협력을 추구하였지만, 실제적인 성과가 부진하였던 현실을 반성하고, 국가도서관정보서비스체제를 국립중앙도서관 중심의 집중형 도서관협력방식에서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분산형 지역협력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광역단위 도서관협력을 활성화하여 주민밀착형의 실용적 정보서비스 체제로 정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지역대표도서관의 서비스체계



○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의해 운영되어온 지역대표도서관의 경우 지역도서관네트워크에 의한 물리적 시스템의 주관기관으로서 그 역할이 수행되어 왔다면, 개정 도서관법에 의해 지정되는 지역대표도서관은 지역도서관정책을 추진하는 협력사업의 주체로서 역할이 강조된다. 광역자치단체에 의해 수립되는 지역도서관정보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의 협력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도서관행정의 조정자(Coordinator)로서 보다 적극적인 선도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지역대표도서관의 법적 역할 변화

구분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 도서관법
법적 근거	- 법 제41~제45조,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 도서관협력망 조항	- 법 제22조 및 제23조, 시행령(안) 제18조 지역대표도서관 조항
지정주체	- 국립중앙도서관	- 광역자치단체
주된 기능	- 전산화된 정보유통체계로서 국립중앙도서관 중심의 도서관협력망 업무를 지원하는 기능	- 광역자치단체의 도서관정보정책을 체계적 으로 시행하기 위한 도서관협력 및 지원기능
정보유통구조	- 국립중앙도서관중심 계층구조	- 지역대표도서관중심 분산구조
16개 지역 대표도서관	- 서울정독도서관, 부산시민도서관, 대구중앙도 서관, 인천북구도서관, 광주시립도서관, 대전 한밭도서관, 울산중부도서관, 경기도립중앙도 서관, 강원춘천평생교육정보관, 충북중앙도서 관, 충남천안시중앙도서관, 전북전주시립도서 관, 전남목포공공도서관, 경북도립구미도서관, 경남창원도서관, 제주우당도서관	- 2007년 4월 지정 예정

2.2 외국의 지역대표도서관 운영

○ 지방자치문화가 발전한 지방분권 국가의 경우, 도서관자체가 지역주민의 복리를 추  
구하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도서관정책업무는 지방정부  
의 고유 업무로 발전되어 온 것이 일반적이다.

-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수준에서 도서관서비스및기술법(Library Service and Technology  
Act)을 제정하여 전국 공공도서관에서의 정보접근을 개선하기위한 재정지원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도서관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실질적인 재정지원의 근간은 주(州)정  
부에 의해 제정된 다양한 지방입법에 근거한다. 연방정부는 지방정부에 의해 추진되  
는 도서관정보정책을 보정하는 수준에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며, 도서관관련 업무를  
책임지는 지방정부는 지역도서관협력시스템을 지역주민에게 실용적 혜택으로 제공하  
기 위해 노력한다.

○ 행정구역 통폐합을 통해 지방분권의 정비를 가속화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공공  
도서관정책의 중심은 지방정부에게 주어지며,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으로 제공되는 공공  
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은 철저히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추진되고 있다. 일본의 광역자치  
단체(都道府縣)가 직영하는 도서관(都立, 道立, 府立, 縣立)은 지역중심 도서관으로서 연구전문  
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 대표적인 광역자치단체 직영도서관으로서 동경도립중앙도서관의 주요기능으로는 1) 도서관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2) 지역주민의 학습 조사 연구 활동 지원, 3) 지역 공공도서관과 상호협력 및 지원, 4) 도서관 미설치 지역에 대한 봉사, 5) 자료보존 기능, 6) 국제교류협력 등이 천명되고 있다.
- 동경의 공공도서관 협력체계를 보면,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 도립도서관은 주로 서지 정보구축, 연구지원, 보완기능 등에 충실하고, 기초자치단체 산하 구시정촌립(區市町村立)도서관은 주민에게 서비스하는 정보서비스, 대출, 문화프로그램 등 서비스기능을 중심으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동경도 공공도서관 기능 분담

구분		분담기능
都立圖書館 (도서관을 위한 도서관)		- 協力援助機能(서지네트워크, 상호대차, 정책 지원) - 參考調査機能(참고봉사협력, 조사연구지원) - 補充的 奉仕(도서관 없는 외곽지역 중 인구밀집지역 봉사)
區市町村 圖書館	中心圖書館(본관)	- 참고도서, 전문서, 해당 區 市의 행정자료, 산업자료, 향토자료를 갖추고 주민의 조사 요구에 서비스
	地區圖書館(분관)	- 대출중심, 주민문화행사 등 개최

- 일본의 자치단체별 공공도서관 설치현황을 보면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縣)은 47개 모두가 공립공공도서관을 직영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인 시구(市區)립도서관은 98.2%, 농촌지역이 많은 정촌립도서관은 46.6%를 나타내어, 농어촌지역일 수록 도서관보급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한국과 일본의 공공도서관 운영주체 비교

구분		都道府縣立	市區立	町村立	합
일본	자치단체수	47	704	998	1,749
	도서관수 (설치율)	63 (100%)	1,712 (98.1%)	1,024 (41.5%)	2,799
구분		광역(市道)	기초(市郡區)		합
한국	자치단체수	16	256		272
	도서관수	교육청 250 자치단체 223			473

### 2.3 지역대표도서관의 임무

○ 지역대표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서 지역주민에 대한 도서관서비스기능을 갖지만, 그보다는 해당지역의 도서관협력활동을 주도하고, 지역보존서고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내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도서관정책을 집행하는 도서관지원 기능을 기본 임무로 가지게 된다. 지역대표도서관은 지역 내 도서관지식자원의 연계 활용을 효율화하는 데 있어 행정적 및 물리적 지원체제를 정비하여, 주민수요에 부합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실용적인 도서관협력 및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도서관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대표도서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1.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자료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2. 지역의 공공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4. 지역의 도서관 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자료의 보존
5.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6. 그 밖에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필요한 업무

- 동법시행령(안)에서는 본법에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종합하여 시장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려고 하고 있다.

1. 지방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차년도 지역도서관 지원정책
2. 지역 내 도서관협력 및 국립중앙도서관과 협력 현황
3. 지역 내 공공도서관 건립 및 공동 보존서고의 운영 현황
4. 지역 내 문고지원과 지역격차 해소 추진 실적
5. 지역 내 도서관활동의 평가 및 실태조사 분석결과

○ 앞서 동경도립공공도서관의 사례와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 및 기능을 참고하여, 국립중앙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등과 비교한 지역대표도서관의 중심기능은 다음과 같은 역할분담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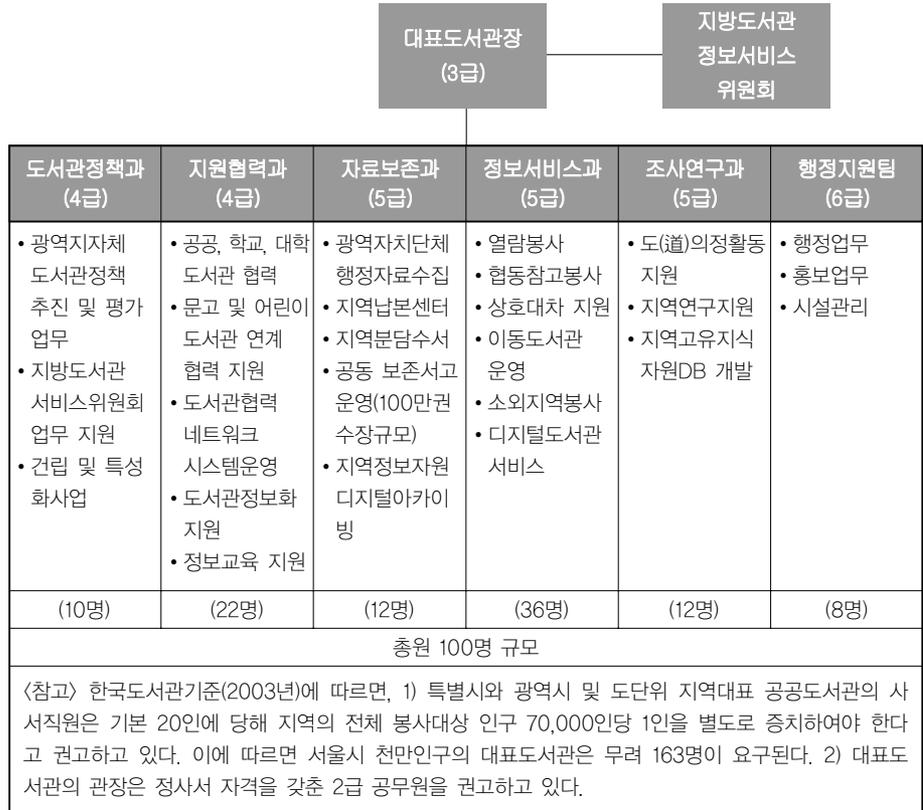
구분	역할 분담
국립중앙도서관	1) 정책집행, 2) 서지 및 기술표준 개발, 3) 전국협력망운영
지역대표도서관	1) 지역도서관정보정책 수립 및 집행, 2) 도서관정보화 지원, 3) 지역협력 네트워크유지보수, 4) 지역특성화 자원개발, 5) 공동보존, 6) 지역격차시정 및 균형개발, 7) 협동참고봉사, 8) 지역연구센터, 9) 광역의회의정자료 지원, 10) 지역납본센터, 11) 사서전문성 개발
공공도서관	1) 지역거점서비스, 2) 문고지원, 3) 특성화, 4) 상호대차

#### 2.4 지역대표도서관 운영모델(안)

○ 지역대표도서관은 광역자치단체가 수립한 도서관정책을 집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일반 공공도서관과는 성격과 기능이 다른 공공도서관이다. 따라서 운영조직의 편제나 시설구성은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수행을 위해 요청되는 방식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우선, 조직측면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도서관정보정책을 집행하고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도서관정책 및 지원협력 부서가 설정되어야 하고,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주요 임무 중 하나로 부여받은 공동 보존업무의 운영을 위한 서고 공간 및 아카이빙장비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 내 대학 및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을 포함하는 광역도서관협력네트워크의 구축과 서비스를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다음은 도서관법에서 요구하는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요망되는 합당한 조직 및 시설의 바람직한 규모를 예상한 모델(안)이다.

〈그림〉 지역대표도서관 조직구성(안)



- 도서관장은 지역대표도서관장으로서 역내 다른 관종과의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도하고, 광역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이 바람직하며, 이하 과(課) 단위 부서장은 업무의 경중에 따라 4급에서 6급까지 사서인력 중심의 임명이 요망된다.
- 앞서 지적된 대표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체조직규모는 100명이상의 전문직원이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 가장 큰 규모의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운영되는 서울 정독도서관의 직원규모가 71명, 부산시민도서관이 63명인 점을 고려하여, 지역대표도서관 기능에 따라 요청되는 정책개발, 지원협력, 조사연구, 보존협력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요청되는 조직편성을 고려하여 추정된 규모이다.

- 참고로 지난 1998년 첨단 디지털기능을 앞세운 시립도서관을 건립하여 세계의 주목을 끌었던 미국 워싱턴주(州) 시애틀(Seattle)시의 중앙도서관은 모두 328명의 직원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공공도서관이라는 찬사를 받는 뉴욕시의 4개 메인도서관에는 무려 1,086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3.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 3.1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업무

○ 개정 도서관법 제24조에서는, “시·도는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둔다.”고 정하고 있다.

도서관법 제24조 제2항(지방도서관위원회의 심의 업무)
1) 지방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2) 지방도서관의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도서관정책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방도서관위원회는 상설 기구가 아니고 또한 여러 분야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심의 기능과 각 분야(지자체, 학계, 문화계, 관중 등)에서 자체의 의견을 제출하고 조정하는 역할로 기대된다.

- 지방도서관위원회는 회의 기구로 실무지원기구가 산하에 없는 만큼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는 것은 지역대표도서관이어야 한다.

### 3.2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운영

○ 도서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운영관련 해당조항은 다음과 같다.

- ③ 지방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대표도서관장이 되며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⑦ 지방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하되,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다수 수렴할 수 있도록 인원수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위원회는 광역시도지사가 위원장(1)이 되며, 지역대표도서관장이 부위원장(1)이 되고, 이하 위원으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관련부서 국장(1), 교육청의 도서관 관련 부서 국장(1), 기초지방자치단체 도서관 관계자(1)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공무원 5인)

- 민간위원으로는 지방의회 관련위원회 소속 의원 1인, 도서관단체 관계자 1인, 지역문화계인사 1인, 교육단체 관계자 1인, 초중등학교장 1인, 문헌정보학 학계종사자 2인 내외, 대학도서관 관계자 1인, 학교도서관 관계자 1인, 공공도서관 실무자 1인 등으로 구성해 볼 수 있다.(민간인 10인)

○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